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1211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https://uber.com/kr/ko/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9.18	대표 이메일 주소	support@ut.taxi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1		

Uber Taxi (우버택시)

정보공개서

유한회사 우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29.

유한회사 우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080-805-962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80-805-962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가목)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유한회사 우티	Uber Taxi (우버택시)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1.26	2021.01.26	송진우	080-805-9622	-
	법인등록번호	110114-0271780		사업자등록번호	166-86-020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나목)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 회사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Uber Taxi (우버 택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역삼동, 위워크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Keir Devon Gumbs (키어데본검브스)	02-6953-6440	-
대표 이사	Thomas Darcy White (화이트토마스다르시)/ 유한회사 우티 2023년 3월 22일 임기만료	UT Taxi (우티 택시)	주 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Thomas Darcy White (화이트토마스다르시)	080-800-5555	-
대표 이사	송진우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주 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진우	080-805-9622	-
이사	Nelson Juseuk Chai (넬슨주석채)/ 유한회사 우티 2022년 3월 1일 사임	UT Taxi (우티 택시)	상동		
이사	Lucinda Yolande Barlow (루신다올란드발로우)/ 유한회사 우티 2023년 3월 22일 임기만료	UT Taxi (우티 택시)	상동		

이사	Pradeep Parameswaran (파라딤파라메스와란)/ 유한회사 우티 2024년 6월 10일 사임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이사	Dominic Taylor (도미닉 테일러)/ 유한회사 우티	Uber Taxi(우버택 시)	상동
이사	Madhusudan Kannan (마두수단카난)/ 유한회사 우티	Uber Taxi(우버택 시)	상동
이사	Sachin Kansal (사친칸살)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이사	Parham Ghods (파르햄고드) / 유한회사 우티 2024년 7월 31일 사임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이사	이종호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이사	박정호 / 유한회사 우티 2021년 10월 22일 사임	UT Taxi (우티 택시)	상동
이사	하형일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이사	윤풍영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	상동

	2022년 7월 25일 사임		
이사	송재승 /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 택시)에서 Uber Taxi(우버택 시)로 변경	상동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라목)

당사는 2021. 4. 1.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대표자: 키어데본검브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역삼동, 위워크타워))의 우버택시(Uber Taxi)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마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명 칭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 상호	Uber Taxi (우버택시) OO(지역명)점	
로 고	미정인 상황으로, 추후 확정 예정	미정인 상황으로, 추후 확정 예정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바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70,573,260	36,334,536	134,238,724	4,470,032	-39,789,051	-39,764,496
2022년	83,470,324	21,282,992	62,187,331	12,886,262	-51,236,947	-118,573,284
2023년	56,016,697	49,377,972	6,638,724	10,470,630	-56,770,167	-55,505,594

당사의 2021년말, 2022년말 및 2023년말의 재무상황 요약은 별첨 감사보고서들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사목)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진우	대표이사	2023.10~현재	대표	총괄
	Dominic Taylor (도미니크테일러)	이사	2024.6~현재	이사	총괄
	Sachin Kansal (사친칸살)	이사	2023.10~현재	이사	총괄
	Madhusudan Kannan (마두수단 카난)	이사	2023. 7~현재	이사	총괄
	이종호	이사	2023.10~현재	이사	총괄
	하형일	이사	2023.10~현재	이사	총괄
	송재승	이사	2023.10~현재	이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아목)

당사의 2022년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27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자목)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대표자: 키어데본검브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역삼동, 위워크타워))는 2021. 1. 26.부터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하여 당사에게 해당 가맹사업을 2021. 4. 1. 양도하기 이전까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로부터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을 양수 받아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UT Taxi(우티택시)로 변경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다만, 2024. 3. 중 국내 우티와 글로벌 우버간 연결성을 강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택시 영업표지를 '우버택시(Uber Taxi)'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건 가맹사업의 경우, 차량공유 서비스로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택시 랩핑, 광고 등에는 "택시(Taxi)"임을 적시하되, 앱 명칭은 "우버(Uber)"로 단순화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차목)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본 이미지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미정인 상황으로,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권리 범위	미정인 상황으로,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표. 가맹본부의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1. Uber Taxi (우버택시) (구 UT Taxi (우티택시))를 시작한 날(가목): 2021. 1. 26.

2. Uber Taxi (우버택시) (구 UT Taxi (우티택시)) 연혁(나목)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Uber Taxi (우버택시)	Keir Devon Gumbs(키어데본검브스) 외 1명(로란스브룩스엔트위슬)	2021. 1.~ 2021.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20층(역삼동, 위워크타워)
유한회사 우티	Uber Taxi (우버택시)	Thomas Darcy White (화이트토마스다르시)	2021. 4.~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17층 이24호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동관)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택시)	Thomas Darcy White (화이트토마스다르시)	2021. 5.~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17층 이24호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동관)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택시)	Thomas Darcy White (화이트토마스다르시)	2022. 4.~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유한회사 우티	UT Taxi (우티택시)	송진우	2023. 10.~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유한회사 우티	Uber Taxi (우버택시)	송진우	2024. 3.~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3. Uber Taxi (우버택시) 업종(다목)

영업표지	업종	
Uber Taxi (우버택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운송	택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라목)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747	1747	0	3150	3150	0	7427	7427	0
서울	1400	1400	0	2579	2579	0	3772	3772	0
부산	0	0	0	0	0	0	1606	1606	0
대구	0	0	0	0	0	0	836	836	0
인천	99	99	0	64	64	0	97	97	0
광주	3	3	0	3	3	0	2	2	0
대전	0	0	0	0	0	0	150	150	0
울산	15	15	0	353	353	0	352	352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219	219	0	125	125	0	543	543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3	3	0	20	20	0	20	20	0
전북	2	2	0	0	0	0	0	0	0
전남	3	3	0	3	3	0	0	0	0
경북	1	1	0	1	1	0	10	10	0
경남	0	0	0	0	0	0	1	1	0
제주	2	2	0	2	2	0	38	38	0

5. 바로 전 3년간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 수(마목)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747	0	0	0	1747
2022	1747	2035	0	632	4	3150
2023	3150	4316	0	39	0	7427

6. Uber Taxi (우버택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바목)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사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경우, (가)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그대로 반영하였고,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하였고, (다) 6개월 미만으로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산정에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427	18,766	-	1,391,324	-	0	-	-
서울	3772	20,379	-	1,391,324	-	0	-	-
부산	1606	0 (6개월 미만)	-	0 (6개월 미만)	-	0	-	-
대구	836	0 (6개월 미만)	-	0 (6개월 미만)	-	0	-	-
인천	97	17,522	-	386,347	-	0	-	-
광주	2	0	-	0	-	0	-	-

대전	150	0 (6개월 미만)	-	0 (6개월 미만)	-	0	-	-
울산	352	10,218	-	230,653	-	0	-	-
세종	0	0	-	0	-	0	-	-
경기	543	4,146	-	48,835	-	0	-	-
강원	0	0	-	0	-	0	-	-
충북	0	0	-	0	-	0	-	-
충남	20	833	-	3,702	-	0	-	-
전북	0	0	-	0	-	0	-	-
전남	0	0	-	0	-	0	-	-
경북	10	3,669	-	17,523	-	191	-	-
경남	1	0 (6개월 미만)	-	0 (6개월 미만)	-	0	-	-
제주	38	84,531	-	84,531	-	0	-	-

* 2023년말 기준 가맹점 수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매출액'과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이 0인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지역은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역임

* 광주지역의 경우 모든 가맹점(2개)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운행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매출액이 0원으로 확인됨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아목)

2023년도 말 영업 중인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각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023년도 말까지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기간)은 **338일**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자목)

당사는 Uber Taxi (우버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차목)

2023년도 당사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은 약 한화 229억 원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2,937,541	22,937,541	0	
광고	소계		6,220,910	6,220,910	0	
	온라인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
	오프라인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브랜드 마케팅 비용

판촉	소계		16,761,631	16,761,631	0	
	기존 탑승객 수요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할인)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기사 영입을 위한 이벤트 비용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신규 탑승객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할인)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상기 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와 일치합니다. 기사 영입을 위한 이벤트 비용은 마케팅 비용이 아닌 매출액으로 기반영되고 있어서, 상기 항목에서는 그만큼을 공제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카목)

당사는 개점 전 가맹비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날 또는 2개월 도과 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업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 개점 전 초기 가맹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수령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타목)

당사는 개점 전 가맹비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날 또는 2개월 도과 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업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 개점 전 초기 가맹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수령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가목)

귀하가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대상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50 / 150	-	-	-
교육비	온라인 : 150 오프라인 : 150	계약 체결 2개월 후 또는 계약 체결 후 가맹점의 운영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교육 전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오프라인 교육에 제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개점 전 가맹비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날 또는 2개월 도과 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업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 교육비를 수령하므로 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	200	택시 가맹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
차량 랩핑	협력업체	200		계약 후 5일 이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귀하의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 상태(위생, 노후화, 안전 문제, 결함 등)에 따라 상기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 구매,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차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표에 따른 금액의 지급 대상은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여객운송가맹사업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함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나목)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우버택시 서비스 비용	가맹본부	운임(부가세 포함)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	운임에서 우버택시 서비스 이용료가 공제된 금액이 주 단위 또는 일단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이율 10%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 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이자 가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우버택시 서비스 비용은 운임(부가세 포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이나 지원금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하는 비용은 이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귀하가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의 상당액을 당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투자하여, 귀하를 비롯하여 당사와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점들이 수익을 창출할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당사 운송플랫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 가입, 마케팅 활동, 소비자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 가맹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지원팀 유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기술인 당사의 어플리케이션과 지급처리·하드웨어·배차 기술 및 운영관리 등 기술 서비스에 투자합니다.

당사가 운송플랫폼 시장에 제공하는 신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가 당사와 함께 하는 귀하에게 새로운 기회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매뉴얼 준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실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관리, 매뉴얼 준수 등을 포함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또는 차량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 및 차량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다목)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한 경우 Uber Taxi (우버택시)의 표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 전 Uber Taxi (우버택시) 표장이 부착된 품목과 기타 가맹점 설비 등을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표장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등 Uber Taxi (우버택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Uber Taxi (우버택시) 표장이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면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면제받은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및/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및 상표 등을 변형하여 Uber Taxi (우버택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정보공개서, 계약서, 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및 승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가목)

1) 귀하가 Uber Taxi (우버택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개별공지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Uber Taxi (우버택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가목 계속)

1)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가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라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택시 운송 서비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에 따름)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기타 택시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거래상대방에게 좌측 기재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마목)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본 가맹사업 업종의 특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4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7은 가맹사업법상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본 가맹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본 가맹사업 업종의 특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4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7은 가맹사업법상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본 가맹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본 가맹사업 업종의 특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4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7은 가맹사업법상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본 가맹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여객법 등 관련법에 의해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구역이 행정관청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합의하에 영업지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본 가맹사업 업종의 특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4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7은 가맹사업법상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본 가맹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나목)

2023년도 말 당사의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은, 온라인 0%, 오프라인 100%입니다. 2023년도 말 당사의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은, 온라인 0%, 오프라인 100%입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바목)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사업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사업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여기서의 서비스기법에는 가맹계약서 별첨 5에서 정하는 서비스 안전 기준이 포함된다)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 또는 가맹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7조 1항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7조 2항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 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 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 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단, 여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사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당사에게 먼저 양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금십오만원(₩150,000, 부가세 포함, 온/오프라인 교육 시)을 납입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사를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상속인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비 금십오만원(₩150,000, 부가세 포함, 온/오프라인 교육 시)을 납입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승계 및 상속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사목 계속)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Uber Taxi (우버택시)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동종 영업의 가맹점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절차는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시기
친절도	서비스 이용→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 개선사항 시정요구→가맹점사업자의 개선 완료	수시
메뉴얼 준수 관리	메뉴얼 준수 확인→관리표 작성, 개선사항 시정요구→가맹점사업자의 개선 완료	수시
차량 외관 관리	랩핑 유지 관리 여부 확인→개선사항 시정요구→가맹점사업자의 개선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아목)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판매상품 광고, 가 맹점 모집광고 등 가맹사업 활성화 를 위한 광고	100%	-	-
	가맹점사업자 또 는 운수종사자의 독자적 광고	-	100%	-
판촉행사	공동 판촉활동	100%	-	-
	개별 판촉활동	-	10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자목)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가맹점의 영업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차목)

(ㄱ) 당사자의 면책의무로 인한 손해 또는 (ㄴ)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1)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는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고지 받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적, 징벌적, 부수적, 예시적, 특별적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영업이익의 손해(계약에 따른 책임, 불법행위 또는 다른 법원칙에 따른 책임 불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2) Uber Taxi (우버택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직접 손해 중 손해를 야기한 사건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Uber Taxi (우버택시)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 하였거나 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가목부터 다목까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2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문의 접수	D-2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5~1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9	
교육 실시	- 개점 전 교육 실시	D-8~6	
차량 랩핑	- 차량 랩핑	D-8~2	
오픈	-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지연이 없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라목)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가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나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 활동 자문(다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라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경영상 지원 제도 운용 내역(마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가목)

당사는 Uber Taxi (우버택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매뉴얼·운영 교육 등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추가 교육	경영상의 필요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별 협의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나목, 다목)

귀하가 Uber Taxi (우버택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오프라인 : 총 6시간, 총 1일	150	최초 계약 시 이수
	온라인 : 총 4시간, 총 1일	150	
추가 교육	개별협의	교육에 필요한 실비 발생시 청구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라목)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마목)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직영점 운영 현황(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가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나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다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2> 본 페이지의 내용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유한회사 우티 (인)

-----가맹희망자, 가맹본부 간인 후 절취(아래쪽을 가맹본부에서 보관)-----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유한회사 우티 (인)